

【 17 】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7. 9. 25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지역보건법(법률제5101호 1995. 12. 29)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자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심의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, 계획의 수립, 시행, 결과의 평가등을 심의함.
- 나.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 (안 제3조 제1항)
- 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소집할 수 있음. (안 제4조)
- 라.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. (안 제5조)

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
4.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“위원장”이라한다.)은 부군수로 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지역주민
2.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3. 보건의료 관련전문가
4. 관계공무원

제 4 조 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통괄한다.

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는 그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조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 6 조 (간사)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보
건행정계장이 된다.

제 7 조 (관계기관장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8 조 (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9 조 (운영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地 域 保 健 法 令

地 域 保 健 法	지 역 보 건 법 시 행령	지 역 보 건 법 시 행 규 칙
<p>● 地域保健法 [1995. 12. 29 法律 第5101號 全文改正]</p> <p>第1條(目的) 이 法은 保健所등 地域保健醫療機關의 設置·운영 및 地域保健醫療事業의 連繫性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行政을 합리적으로 組織·운영하고, 保健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國民保健의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.</p> <p>第2條(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賛助) ① 國家는 地域保健醫療에 관한 調査·研究, 情報의 蒐集·정리 및 활용, 人力의 養成 및 資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고, 特別市·廣城市·道(이하 "市·道"라 한다) 및 市·郡·區(自治區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의 保健施策의 수립·施行에 필요한 技術的·財政的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市·道는 당해 市·道의 保健施策의 추진을 위한 調査·研究, 人力確保, 資質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, 市·郡·區의 保健施策의 수립·施行에 필요한 技術的·財政的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市·郡·區는 당해 市·郡·區의 保健施策의 추진을 위하여 保健所등 地域保健醫療機關의 設置·운영, 人力確保, 資質向上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● 지역보건법시행령 [1996. 7. 13. 대통령령 제15119호 전문개정]</p> <p>제1조(목적)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● 지역보건법시행규칙 [1997. 2. 14. 보건복지부령 제45호]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.</p>

地 城 保 健 法	지 역 보 긴 법 시 행령	지 역 보 긴 법 시 행 규 칙
第3條(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 등) ①市長·郡守·區廳長 (自治體의 郡廳長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地域住民 保健醫療關聯機關·團體 및 專門家의 의견을 들여 當해 市·郡·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當해 市·郡·區議會의 議決을 기자 特別市長·廣域 市長·道知事(이하 “市·道知事”라 한다)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	제2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지역보건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개회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	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할 市·郡·區의 地域 保健醫療計劃을 제출받은 市·道知事은 관할 市長· 郡守·區廳長· 地域住民·保健醫療關聯機關·團體 및 專門家의 의견을 들여 市·道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当해 市·道議會의 議決을 기자 保健 福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1.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. 지역보건의료개회의 수립에 관한 사항 3. 지역보건의료개회의 시행 및 시행경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. 기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주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	
③市·道知事 또는 市長·郡守·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保健醫療計劃(이하 “地域 保健醫療計劃”이라 한다)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關聯機關·團體 등에 대하여 資料提供 및 協力を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당해 機關·團體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	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자로 한다.	제2조(지역보건의료개회의 조정권고) ①지역보건법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보건의료개회의 내용에 관하여 조정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④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·道知事은 地域保健醫療 計劃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·道知事 또는 市長·郡守·區廳長에 대하여 保健 福祉部장이 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調整을 권고 할 수 있다.	1. 지역주민 2.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 3. 보건의료관련전문가	1. 지역보건의료개회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

地 域 保 健 法	지 약 보 건 법 시 행령	지 약 보 건 법 시 행 규 칙
第4條(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·8) ①地域保健醫療計劃 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保健醫療需要 測定 2. 保健醫療에 관한 長短期 供給對策 3. 人力·組織·財政등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 4. 保健醫療의 傳達體系 5. 地域保健醫療에 관관된 統計의 蒐集 및 정리	<p>4. 관계공무원</p> <p>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경우</p> <p>2. 지역보건의료개회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</p> <p>3.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 히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4.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 행정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5.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보건의료개회의 내용에 현지화 불가성이 있는 경우</p> <p>⑦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빼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개회의 조정권고를 함께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